# 2021년도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11. 15.(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1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80건(안건번호 제2021-156842호~15803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56842호~156846호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바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56847호는 원저작물의 1/10 분량만을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부결함.
  그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7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438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17381호~1781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의 총 438개 URL 정보에 관하여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31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쇼핑몰명, 6쪽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물명, 저작물명 등 민원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58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1-141984호~14296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6842호~156846호는 실명의 민원인 3명이 각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 ‘○○○○○○○○○○○○○○○○○’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56842호~15684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순번 1번의 경우 영화의 OST만을 제공하고 있는 건인데 OST에 대하여 영화와 구분되는 독립된 합법 시장이 존재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OST가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제시하면서)◎◎◎◎◎에서 해당 OST의 실물 CD가 약 ￥2,670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영화 시리즈의 OST 앨범은 영화의 국내 수입과 함께 이루어지나,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시리즈는 최신작으로, 아직 OST 앨범의 국내 정식 수입 및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국내에서도 해당 외국 사이트를 통해 구입이 가능함.

- A 위원: 그렇다면 안건번호 제2021-156842호~156846호 모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6842호~156846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6847호는 ☆☆☆☆ 블로그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의 일부를 제공 중인 사안임.
  원저작물인 '◆◆◆◆◆◆◆◆◆◆◆◆◆◆◆◆◆'은 106분 분량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중 약 1/10인 12분가량을 제공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히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음.
  공정이용 판단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의 1/10 분량의 결말 부분만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만으로는 원저

작물을 대체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소극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것임. 또한 심의대상 블로그 및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568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블로그는 운영자가 개인적 관심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측되며, 기타 영상물로는 고전게임 플레이 영상, 게임대회 플레이 영상 등이 있음.

- A 위원: 영리적 목적은 전혀 없는 블로그로 보임. 운영자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기록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운영기간에 비하여 게시물 수가 매우 적고, 게시물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음. 일기장 수준으로 보임.

- E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건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 B 위원: 원저작물의 1/10 분량만을 이용 중인 건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A 위원: 동의함. 해당 분량만으로는 시장 대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더불어 비영리적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로 보여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움.

- D 위원: 개인의 관심사를 기록하는 블로그에서 원저작물의 1/10 분량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음.

- E 위원: 같은 생각임.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원저작물의 1/10 분량만을 이용 중인 점, 해당 블로그의 성격이 비영리적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6847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6848호~15803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Panorama'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7064호는 2020. 12. 7. 발매한 가수 아이즈원의 Panorama 등 2020년 인기음원 모음을 63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FLAC 파일 형태로 1,549개의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방송 '지리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7734호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은 현재 방영 중인 방송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 시점까지의 방영분을 53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컴퓨터 프로그램 '한글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7801호는 2021. 10. 8. 출시한 한글 2022 교육기관용 프로그램을 11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설치 시 별도 인증 없이 시디 키가 자동 입력되는 버전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56848호~1580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6848호~15803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6847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56842호~156846호 및 제2021-156848호~15803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381호~17818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2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